

개정법률 48/2002 Coll.

슬로바키아 국회(National Council)가 제정한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그 밖의 일부 법률 개정)

발효일자: 2010년 1월 15일 (제1편의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99조, 그리고 제3편은 제외. 이 규정들은 2010년 4월 5일 발효함)

법령집 __/2009호에 공포됨.

48/2002 Coll.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그 밖의 일부 법률 개정)

2009년 12월 1일자

슬로바키아 국회는 다음과 같이 법률을 채택한다.

제1편

법률 408/2002 Coll., 480/2002 Coll., 606/2003 Coll, 69/2005 Coll., 474/2005 Coll, 558/2005 Coll., 693/2006 Coll., 342/2007 Coll., 233/2008 Coll., 445/2008 Coll. 및 451/2008 Coll.에 의해 개정된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48/2002 Coll., 그 밖의 일부 법률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

총칙

제1조

이 법은 다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a) 별도의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로의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 및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로의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에 관한 조건¹⁾
- b)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체류(이하 “체류”라 한다)에 관한 조건
- c) 외국인에 대한 증서(documents) 발급에 관한 조건
- d) 외국인, 그 밖의 자연인 및 법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의무
- e) 체류 신고,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규제에 관한 절차
- f) 슬로바키아 영토로부터의 행정상의 추방(이하 “행정추방”라 한다)에 관한 조건과 절차
- g) 외국인의 외국인수용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의 구금과 수용에 관한 조건
- h)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경찰에 의한 외국인의 이동(이하 “경찰에 의한 이동”이라 한다)에 관한 조건
- i)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항공기 환승에 관한 조건, 그리고
- j) 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경범죄 및 그 밖의 행정적 범죄

1) 1a)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을 규율하는 공동체법의 성립을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2006/562/EC (2006년 3월 15일, Schengen Borders Code) (EC 관보, L 105, 2006년 4월 13일)

(2) 슬로바키아 국적인이 아닌 자는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3) 이 법은 별도의 법²⁾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망명 또는 보조적인 보호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망명이 허락된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보조적인 보호를 제공받은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을 요청하였거나 이를 제공받은 외국인에 적용된다.

(4) 2005년 12월 15일 폐지됨

제2조

이 법의 목적상

- a) “여행증서”는 여권이나 그 밖의 공적 증서를 의미한다. 단, 슬로바키아에 의해 여행증서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만기일 측면에서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된 것이어야 하며 기록을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b) “연속적인 체류”는 거주허가에 의한 체류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은 입국일부터 도과하기 시작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연속적인 체류에는 금고형의 집행 기간 및 180일을 초과하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해외 체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c) “국경검문소”는 입국과 출국에 관한 국제조약에 의해 결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입국과 출국을 위해 정해진 공공 공항이나 항구도 국경검문소로 간주된다.

2)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 d) “기피인물”(undesirable person)은 입국금지 또는 추방³⁾을 당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 e) “숙박업자”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한다.
- f) “운송업자”는 사람의 운송을 허가 받은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한다.
- g) “시설”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른 구금 결정에 따라 머물러야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 h) “국경 간 운송”은 국경으로부터 20 킬로미터 이내의 국제버스노선에 의한 사람의 운송을 의미한다.⁴⁾
- i) “항공기 환승”은 외국인이 목적지인 국가로의 항공기 운송을 위해 슬로바키아 영토 내의 공공 공항의 부지를 통하여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j) “자발적인 귀국”은 외국인의 본국, 종전 주거지 또는 그 외국인이 돌아가고자 하며 이를 허락하는 제3국으로의 귀국을 의미한다.
- k) “취약인 (vulnerable person)”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 임신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쪽 부모 및 고문이나 그 밖의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 폭력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l)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슬로바키아 제외), 그 밖의 유럽경제지역협약 회원국 및 스위스연방을 의미한다.
- m)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은 다음을 의미한다.

3) 2) 개정 형법 제57조

4) 2a) 법률 298/1999 Coll. 제2조 (1)

1. 배우자 및 그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그의 피부양 자녀
2. 21세 미만 자녀 또는 피부양 자녀⁵⁾
3. 시민이 부양하는 직계친족
4. 시민이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친족
5. 시민이 부양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시민의 세대 구성원

제2부
입국

제1장
입국 조건

제3조

- (1)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외국인의 입국은 그 외국인이 등록된 여행증서를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되지 아니한다. 여행증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사증 요건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16세 미만의 외국인도 사증에 등록되어야 한다.
- (2) 외국인이 입국 시에 자신이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명시한 유효한 거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은 비자 요건을 면제받는다.

제4조

- (1) 슬로바키아 내무부(이하 “내무부”라고 한다)는 외국인이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 별도의 법⁶⁾에 따라 그 외국인의 슬

5) 11) 법률 600/2003 Coll. 제3조

6) 1a)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62/2006 (2006년 3월 15일)

로 바키아 영토에의 체류와 관련된 경비를 매우기 위한 비용의 총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내무부는 국경검문소 너머의 관세선을 통한 사람의 국경 통과와 상품의 운송이 별도의 법⁷⁾에 따른 세관당국의 권한 하에 있는 것이 아닌 한, 국경검문소 너머의 외부국경의 통과를 별도의 법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1) 경찰대 구성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법⁹⁾에 따라 국경관리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2) 경찰관은 국경관리 시 외국인이 위조되었거나 수정된 여행증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여행증서를 압수할 권리가 있다. 경찰관은 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서를 자신의 증서로 제출하였거나 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가 무효이거나 도난당한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 이를 압수할 수도 있다.

제6조

유럽경제지역 시민에 대한 입국 거부

(1) 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a) 외국인이 기피인물인 경우

7) 3) 관세법 및 그 밖의 법에 대한 개정에 관한 법률 199/2004 Coll. 제14조 (6) 및 (9)

8) 1a)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62/2006 (2006년 3월 15일)

9) 1a)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62/2006 (2006년 3월 15일)

b) 외국인이 국가의 안보나 공공정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나 공공의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c) 외국인이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사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2) 경찰관은, 입국 거부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에게 다음을 허용하여야 한다.

a) 합리적 기간 내에 여행증서를 획득하거나

b) 자신이 자유로운 이동 및 체류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

제7조

입국 거부의 예외

(1) 국경관리 시 망명 또는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보조적 보호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보조적 보호를 제공받은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처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받은 외국인, 또는 제48조에 따른 여행증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없다.

(2)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허가를 허가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없다.

제2장

사증

제8조

생겐 Schengen 사증

- (1) 외국인은 별도의 법¹⁰⁾에 따라 통합 사증(uniform visa), 유효 영토가 제한된 사증 및 공항통과사증(모두 이하 “Schengen 사증”이라고 한다)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2)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Schengen 사증의 성격과 발급 조건은 별도의 법¹¹⁾에 규정된다.
- (3) 망명신청자 또는 보조적 보호를 제공받은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은 유효 영토가 제한된 사증을 부여받는다.¹²⁾

제9조 내지 제11조

2007년 12월 21일에 발효한 법률 342/2007 Coll.에 의해 폐지됨

제12조

슬로바키아 사증

- (1)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거주허가의 수여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슬로바키아의 국제조약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슬로바키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외국인은 슬로바키아 사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2) 슬로바키아 사증은 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에 대해 부여된다. 그 사증이

10)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1)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2) 4a) 규칙 810/2009 제25조 (1)(a)

슬로바키아 거주 허가와 관련하여 부여되는 경우 무기한으로 부여된다.

제13조
Schengen 사증 부여 절차

- (1) Schengen 사증의 부여는 경찰청(이하 “경찰”이라고 한다)에 의해 확인된 초청장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2) 슬로바키아의 해외 주재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이하 “대사관”이라고 한다)은 내무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Schengen 사증을 부여할 수 있다. 내무부와 슬로바키아 외무부(이하 “외무부”라고 한다)는 사안의 결정에 대한 합의를 맺어 일정 사안에서는 대사관이 내무부의 동의 없이 Schengen 사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내무부는 별도의 법¹³⁾에 따른 협의 절차 내에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교사절이나 영사관에 대해 사증의 부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3) 대사관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국경검문소는 Schengen 사증에 표기된다.
- (4) Schengen 사증의 부여 결정은 항의할 수 없다. Schengen 사증의 부여 거절 결정의 경우,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 구성원 및 망명신청자나 보조적 보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인 외국인에 의해 항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의 경우 별도의 법¹⁴⁾에 규정된 경우에만 항의를 할 수 있다.
- (5) 대사관 또는 경찰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Schengen 사증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Schengen 사증의 취소 또는 철회 결정에 대한 항의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 구성원 및 망명신청자나 보조적 보호를 부여받은 외국

13)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4)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인의 가족 구성원인 외국인이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의 경우 별도의 법¹⁵⁾에 규정된 경우에만 항의를 할 수 있다.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사관 결정에 대한 항의는 외무부가 결정한다.

(7) 내무부는 별도의 법¹⁶⁾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Schengen 사증의 유효기간을 매 6개월 당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그리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Schengen 사증 부여는 별도의 법¹⁷⁾에 의해 규율된다.

(9)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가족 구성원은 해당 유럽경제지역 시민에 대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여행증서 및 필요한 경우 부양 확인서로 Schengen 사증 신청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대사관과 경찰은 늦어도 10일의 근무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슬로바키아 국가 사증 부여 절차

(1) 외국인은 공식 양식을 이용하여 대사관에 슬로바키아 국가 사증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 사증에 대한 신청에는 여행증서, 3 센티미터 × 3.5 센티미터 크기의 천연색 사진, 체류의 목적을 확인하는 문서, 건강보험증명서 및 국가 사증 부여 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그 밖의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경우 외국인은 대면 인터뷰에 출석하여야 한다.

15)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6)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7)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 (3) 대사관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국가 사증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 (4) 대사관은 내무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내무부와 외무부는 사안의 결정에 대한 합의를 맺어 일정 사안에서는 대사관이 내무부의 동의 없이 국가 사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5) 국가 사증은 여행증서에 부착된 스티커의 형태를 가진다. 스티커의 유효 기간은 늦어도 여행증서 만료 90일 전에 만료한다.
- (6) 대사관은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국경검문소는 국가 사증에 표기된다.
- (7) 대사관과 경찰은 국가 사증 거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외국인이 행정추방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 사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 (8) 사증 부여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거절의 이유를 통보하지 아니한다. 국가 사증 부여 또는 취소 절차는 별도의 법¹⁸⁾에 의해서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 법령¹⁹⁾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제14a조

- (1) 국경검문소의 경찰은 별도의 법²⁰⁾에 따라 외국인에게 사증을 부여할 수 있다.

18) 4) 사증에 관한 공동체법의 수립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810/2009 (OJ L 243, 15.9.2009)

19) 6) 이사회 규칙 (EC) 415/2003 (2003년 2월 27일)

20) 6a) 선원에 대한 국경에서의 사증 발급을 포함하여 국경에서의 사증 발급에 관한 2003년 2월 27일의 규칙 2003/415/EC (EC 관보, L 064, 2003년 3월 7일)

제15조

초청장

- (1) 초청장은 초청하는 사람 및 초청된 외국인에 관한 정보, 그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초청되는 목적 및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공식 양식을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초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초청된 사람의 체류와 출국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 (2) 초청장은 초청하는 자연인의 주거 장소 또는 초청하는 법인의 등록 사무소에 따라 권한 있는 경찰 단위에 의해 내무부의 사전 동의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이 확인은 구속적 성격을 가진다.
- (3) 경찰은 다음의 경우 초청장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 a) 초청된 사람이 기피인물인 경우
 - b) 초청장이 제1항 상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c) 초청장에 명시된 외국인의 체류 목적이 초청장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 d) 초청된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국가의 안보, 공공정책, 보건,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 및 특정 영역의 경우 자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e)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2항상의 내무부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 (4) 경찰은 초청장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확인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령²¹⁾은 초청장 확인에 관한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

2008년 12월 1일 발효한 법령 451/2008 Coll.에 의해 폐지됨

제3부 체류

제1장 일시 체류

제17조 총칙

(1) 일시체류허가는 외국인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체류를 허가하고 경찰이 그 외국인에게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한 기간 내에 해외를 여행하고 슬로바키아 영토로 귀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일시체류허가는 해외 거주 슬로바키아인의 지위가 부여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아니한다.²²⁾

(3)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1) 6) 이사회 규칙 (EC) 415/2003 (2003년 2월 27일)

22) 8) 해외 거주 슬로바키아인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74/2005 Coll.

체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럽경제지역에 주거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제38조 (1)(b)상의 체류(이하 “장기 체류”라고 한다)가 적용되는자의 경우 그의 요청이 있다면 경찰은 이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일시체류허가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만 발급된다.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가 부여된 목적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는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일시체류허가의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5) 제18조 (a), (b) 및 (d)-(f) 상의 일시체류허가가 부여된 외국인은 일시체류의 기간 동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일시체류의 목적

경찰은 외국인에게 다음의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a) 사업의 수행
- b) 취업
- c) 학업
- d) 특수 활동
- e) 가족과의 재결합 유지, 또는
- f) 군대의 군무원에 의한 공무의 수행²³⁾

제19조

23) 8a)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십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고시 324/1997 Coll.)

사업의 수행

경찰은 별도의 법²⁴⁾에 따라 발급된 사업면허에 근거하여서만 사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일시체류허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그러한 사업에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여될 수 있다.

제20조

고용

(1) 경찰은 취업허가에 근거하여서만 고용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²⁵⁾ 이는 취업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²⁶⁾ 또는 국제조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경찰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역년 당 최대 180일의 기간에 대하여 단기취업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체류허가를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외부국경²⁷⁾의 통과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취업 목적의 일시체류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내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²⁸⁾를 위해 일하는 경우

b) 해당 외국인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용자²⁹⁾에 의해 그 사용자의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슬로바키아에 배치된 경우

24) 9) 예를 들면, 상법

25) 10a) 법률 5/2004 Coll.

26) 10b) 법률 5/2004 Coll. 제22조 (7)

27) 10ba) 개정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EC) 562/2004 제2조 (2)

28) 10bb) 중요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일정 조치 및 그 밖의 일정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175/1999 Coll. 제3조

29) 10bc) 개정 법률 5/2004 Coll. 제22조 (7)(n)

c) 해당 외국인이 국제여객수송에 고용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사용자³⁰⁾에 의해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경우

d)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 밖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용자(또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한 부분)와의 고용계약 하에 있는 경우. 단, 그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을 자연인 또는 법인과 체결된 조약에 근거하여 슬로바키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하였어야 한다.³¹⁾

제21조

학업수행

(1) 경찰은 슬로바키아 내의 학교의 학생이거나 슬로바키아 내의 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학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경찰로부터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외국인은 별도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만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³²⁾

(3) 학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는 외부국경의 통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³³⁾

제22조

특수 활동

30) 10bd) 개정 법률 5/2004 Coll. 제22조 (7)(p)

31) 10be) 개정 법률 5/2004 Coll. 제22조 (7)(a)

32) 10c) 개정 법률 5/2004 Coll. 제22조 (7)(c)

33) 10ba) 개정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EC) 562/2004 제2조 (2)

(1) 경찰은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의 특수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a) 강연 활동
- b) 예술 활동
- c) 스포츠 활동
- d) 슬로바키아 영토 밖에서의 연구의 범위 내에서의 단기 파견
- e) 슬로바키아 정부의 프로그램 또는 유럽경제지역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 f) 국제조약의 결과로서 발생한 슬로바키아의 의무의 이행
- g) 의학적 치료(필요한 경우 치료받는 외국인을 동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가가 부여될 수 있다), 또는
- h) 봉사 활동

(2) 경찰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노동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연구나 개발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수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³⁴⁾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시체류허가는 외부국경의 통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³⁵⁾

제23조

가족 재결합의 유지

(1) 경찰은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 가족 재결합의 유지를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a) 일시체류허가 또는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 단, 그 배우자가

34) 10d)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지원조직에 관한 법률 172/2005 Coll. (국가활동조직 및 중앙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575/2001 Coll. 개정) 제2조

35) 10ba) 개정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EC) 562/2004 제2조 (2)

최소한 18세의 연령이어야 한다.

- b)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 망명이 허가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로서 법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자녀를 돌보는 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 c)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18세 이상의 피부양자녀³⁶⁾
 - d) 망명을 허가받은 18세 미만의 자의 직계친족
 - e) 제19조 또는 제20조 (1)에 따른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또는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한쪽 부모, 또는
 - f) 국제조약 상의 피부양인³⁷⁾
- (2) 경찰은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또는 그의 배우자의 18세 미만의 외자녀인 외국인에 대하여 가족 재결합 유지를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갖지 못하였으나 자녀를 면접할 권리가 있는 부모가 가족 재결합 유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외국인이 제22조 (2)상의 외국인과의 가족 재결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경찰은 그 외국인에게 제22조 (2)상의 외국인의 체류허가 기간의 종료 시까지 유효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제19조 또는 제20조 (1)상의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 또는 영주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과의 가족 재결합 유지를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제1항 (e)상의 외국인 및 제1항 (d)상의 외국인을 제외하

36) 11) 법률 600/2003 Coll. 제3조

37) 11a) 예를 들면,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십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고시 324/1997 Coll.)

고 12개월간의 연속적인 체류 후에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노동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제23a조 군대의 군무원에 의한 공무의 수행

군대의 군무원에 의한 공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체류허가는 파견국의 군무원이며 그 군대에 복무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경찰이 부여하여야 한다.

일시체류허가의 신청

제24조

(1) 외국인은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자신의 여행증서를 발급한 국가에 파견된 외교사절 또는 자신의 거주국에 파견된 외교사절에 직접 일시체류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교사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외무부는 그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 신청을 접수할 외교사절을 내무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당국은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에 대한 확인서를 그 접수 일에 발급하여야 한다.

(2) 사증이 요구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허가가 부여되는 고용 목적의 외국인의 일시체류의 경우³⁸⁾,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1)(b), (d) 및 (f)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의 경우, 망명³⁹⁾이 허가된 자의 배우자의 체류의 경우, 제23a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의 경우,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 또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경우, 외국인은 경찰에도 일

38) 11b) 법률 5/2004 Coll. 제22조 (5)

39)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시체류허가 신청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에 대한 확인서를 그 접수일에 발급하여야 한다.

(3) 제23조에 따른 가족 재결합 유지를 위한 일시체류허가 신청의 경우 외국인이 장애를 이유로 직접 일시체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재결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다.

(4)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목적 변경을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제20조 (2)에 따른 일시체류허가
- b) 제21조에 따른 일시체류허가. 자신의 학업을 종료하고 고용 또는 사업수행 목적으로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이다.
- c) 사업수행이나 고용 목적의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였던 외국인과의 가족 재결합 유지 목적의 일시체류허가

(5) 제4항 (c)상의 외국인이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그의 연속적인 일시체류가 최소 3년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또는 제4항 (c)상의 외국인이 성년이 된 경우 그 외국인은 사망증명서가 발급된 날, 이혼이 성립한 날 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에 자신의 체류 목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1)(a)는 이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슬로바키아 내의 외국인 투자자를 대표하거나 그에 고용된 외국인으로서 동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시민인 자, 슬로바키아 내의 중요 외국인 투자자⁴⁰⁾를 대표하거나 그에 고용된 외국인 및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는 일시체류허가를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40) 10bc) 개정 법률 5/2004 Coll. 제22조 (7)(n)

(7) 장기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체류허가를 경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1) 외국인은 공식적인 양식을 이용하여 일시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외국인은 자신의 여행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교사절 또는 경찰은 그의 일시체류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대사관은 일시체류허가 신청서가 체류 목적을 확인하는 문서 또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본국에 의한 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은 같은 원판에서 현상한 2매의 3×3.5 센티미터 크기의 최근 사진을 일시체류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의무를 가진다.

(3) 외국인은 일시체류허가 신청서에 다음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90일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a) 체류 목적

b) 그 외국인의 진실성. 이는 제23a조 하의 외국인의 경우, 장기거주를 허락 받은 외국인, 14세 미만의 외국인, 또는 슬로바키아 내의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를 대표하거나 그에 고용된 외국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체류 목적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c) 체류에 대한 재정적 준비금. 이는 제23a조 하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d) 일시체류 기간 동안의 거소. 이는 출근 또는 등교를 위하여 인접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 제21조에 따라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고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및 제22조 (2)에 따라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 외국인의 장기체류

f) 제23조 (2) 하의 동의

(4) 외국인은 다음으로 그의 체류 목적을 증명한다.

a) 제19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사업수행 허가를 확인하는 문서

b) 제20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허가⁴¹⁾ 또는 그 외국인이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활동⁴²⁾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용자의 확인 또는 국제조약에 의한 확인

c) 제21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인의 입학승인에 관하여 관련 국가 행정당국,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d) 제22조 (1)(a)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강연 활동의 수행에 관하여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e) 제22조 (1)(b)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가 행정당국 또는 예술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제22조 (1)(c)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

41) 10a) 법률 5/2004 Coll.

42) 10b) 법률 5/2004 Coll. 제22조 (7)

하는 외국인의 경우 스포츠조직 또는 관련 국가 행정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 f) 제22조 (1)(d)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 파견에 대한 확인서
- g) 제22조 (1)(d)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서
- h) 제22조 (1)(e)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 프로그램 또는 유럽경제지역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의 수행을 감독하는 국가 행정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 i) 제22조 (1)(f)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조약
- j) 제22조 (1)(g)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치료에 관한 의료시설의 확인서 또는 동행인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문서
- k) 제22조 (1)(h)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봉사활동 수행에 관한 NGO의 확인서
- l) 제22조 (2)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연구소 또는 과학기관에의 고용 협약
- m) 제23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출생등록소(Birth Registry)에 의해 발급된 문서. 18세 미만인 외자녀, 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 자녀,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한쪽 부모 또는 국제조약 상의 피부양인의 경우, 이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n) 제23a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군대 파견에 관한 개별 명령 또는 공동 명령, 또는

o) 그 밖의 증빙 문서

(5) 외국인은 자신의 입국 또는 일시체류허가의 부여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류 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확인하는 문서 및 자신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제23a조 하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염병에 관한 문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장기거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 제3항 (c), (d) 및 (f) 상의 요건의 총족은 제23조 (1) 상의 외국인이 요청하는 가족 재결합 유지의 대상인 외국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7) 외교사절 또는 경찰은 외국인에게 자신이 그 확산이 처벌 대상인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는 문서로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 및 그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외교사절 또는 경찰은 제22조 및 제23a조 하의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8) 외국인이 망명⁴³⁾을 허가받은 자와의 가족 재결합 유지를 목적으로 그 망명⁴⁴⁾의 허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은 신청서와 함께 여행증서 및 그들 간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에 대한 재정 준비금으로 체류기간의 매월 당 최저 임금⁴⁵⁾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의 일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에 대한 재정 준비금으로 체류기간의 매월 당 최저 임금

43)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44)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45) 3) 관세법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199/2004 Coll. 제14조 (6) 및 (9)

금액의 5배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일시체류허가 신청의 결정

(1) 경찰은 일시체류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공공이익, 특히 안보의 측면, 슬로바키아의 경제적 필요, 특히 그 외국인의 사업 활동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공헌하는 정도 및 공공보건

b)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 개인의 및 가족의 상황, 외국인의 재정적 상황 및 외국인의 이전 체류의 기간과 예상 체류의 기간

(2) 경찰은 다음의 경우 일시체류허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a) 외국인이 기피인물인 경우

b) 외국인이 체류 시 국가의 안보, 공공정책, 보건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 및 특정 영역의 경우 자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c)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보험제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d)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e) 일부다처 혼인인 경우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다른 배우자에

관한 것인 경우

f) 외국인이 고의로 거짓의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명시하였거나 위조 또는 변경된 문서 또는 다른 사람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

g) 문서의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h)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 일시체류허가의 부여가 공공이익에 반하는 경우

(3) 경찰은 90일 이내에 일시체류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복잡한 사안의 경우, 이 시한은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 (6) 상의 외국인의 경우 경찰은 신청자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일시체류허가가 부여되는 경우 결정은 발급되지 아니한다.

(5)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장기체류를 하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일시체류허가의 부여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체류허가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외국인에게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일시체류허가의 갱신

(1) 경찰은 다음과 같이 일시체류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a) 단기고용의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가 180일 미만의 기간에 대해 부여되었고 그 일의 종료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 최대 180일의 기간
- b) 그 외국인의 예상체류가 최소 3년 동안 더 지속할 예정인 경우 최대 3년의 기간
- c)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최대 5년의 기간

(2) 외국인은 일시체류허가의 갱신 신청을 공식 양식을 이용하여 경찰에 접수하여야 한다. 경찰은 신청 접수에 대한 확인서를 접수일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사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 갱신 신청서에 자신이 세금 및 관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료보험료, 질병보험료, 노년보장보험료 및 실업보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은 사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 갱신 신청서에 자신이 세금 및 관세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료보험료, 사회보장보험료 및 노년연금저축액을 납부하였다고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이 납세자가 아니거나 의료보험료 또는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그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시체류허가는 그 갱신 신청에 대한 결정이 교부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6조 (2) 하의 사유와는 별도로, 경찰은 일시체류허가가 가족 재결합 유지의 목적으로 부여되었으나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가족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일시체류허가 갱신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5) 이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일시체류허가 갱신 신청에도 적용된다. 경찰은 이 법에 규정된 의무가 충족되는 경우 제21조 및 제22조 (2) 하의 일시체류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6) 외국인은 사업수행 목적의 일시체류허가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세후 수입으로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⁴⁶⁾ 이는 장기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경찰은 일시체류허가 갱신 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슬로바키아 출국을 위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결정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제28조

일시체류허가의 종료

일시체류허가는 다음의 경우 종료한다.

- a)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의 발부로부터 180일 이내에 슬로바키아 영토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 b)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의 종료를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 c) 외국인의 일시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 d) 외국인에게 추방의 형이 부과되는 경우⁴⁷⁾
- e) 외국인이 행정추방의 대상이 되는 경우
- f) 경찰이 제24조 (5) 상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46) 12a) 소득세에 관한 법률 595/2003 Coll.

47) 2) 개정 형법 제57조

- g)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부여받는 경우
- h)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부여받는 경우
- i) 경찰이 외국인의 일시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 j)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선고되는 경우

제29조

일시체류허가의 취소

- (1) 경찰은 다음의 경우 일시체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a) 외국인에게 일시체류허가를 부여하였던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b) 경찰이 일시체류허가 신청 거절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c) 외국인이 제25조 (2) 상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d) 외국인이 경찰에 대한 서면 통지 없이 연속적으로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e) 경찰이 그 외국인이 일시체류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혼인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 f) 외국인이 이 법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중히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 특히 외국인의 사적 생활 및 가정생활의 측면에서 일시체류허가 취소의 사유가 일시체류허가 취소의 결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장기체류하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일시체류허가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경찰은 일시체류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동시에 그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합리적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결정이 최종적이 되는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가입조약의 발효일에 폐지됨

제30조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가입조약의 발효일에 폐지됨

제31조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가입조약의 발효일에 폐지됨

제32조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가입조약의 발효일에 폐지됨

제33조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가입조약의 발효일에 폐지됨

2004년 5월 1일에 발효한 법률 606/2003 Coll.에 의해 폐지됨

제2장

영주

제34조

(1) 영주허가는 이 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경찰에 의해 부여된 영주허가의 기간 내에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고 슬로바키아 영토 밖으로 여행하였다가 귀환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 경찰은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에는 5년의 기간 동안의 영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이하 “최초허가”라고 한다) 5년이 경과한 후 경찰은 다시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한의 영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이하 “후속허가”라고 한다)

제35조

최초허가

(1) 경찰은 다음의 외국인에게 최초 영주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a)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영주허가를 보유한 슬로바키아 시민의 배우자 또는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영주허가를 보유한 슬로바키아 시민의 피부양 직계친

족

- b)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영주허가를 보유한 슬로바키아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 c)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18세 미만인 외자녀 또는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 d)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18세 미만인 피부양 자녀⁴⁸⁾
- e) 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2)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영주허가를 보유한 슬로바키아 시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외자녀인 외국인,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외자녀인 외국인의 경우, 그 자녀를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면접할 권리가 있는 다른 부모가 가족 재결합 유지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최초허가의 신청

제36조

외국인은 최초허가의 신청을 외교사절 또는 경찰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제35조 (1)(e) 하의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접수할 의무가 없다. 제35조 (1)(a) 하의 외국인이 장애의 이유로 직접 신청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 최초허가의 신청은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가족 재결합 유지의 대상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접수될 수 있다. 신청을 수락한 당국은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 확인서를 접수일에 발급하여야 한다.

48) 11) 법률 600/2003 Coll. 제3조

제37조

- (1) 외국인은 공식 양식을 이용하여 최초허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2) 외국인은 최초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여행증서를 제출하고 제25조
(2) 하의 사진을 첨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이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교사절 또는 경찰은 영주허가 신청서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 (3) 외국인은 다음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최초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a) 제35조에 언급된 사실
 - b) 자신의 진실성
 - c) 체류를 위한 재정적 준비금
 - d) 필요한 경우 제35조 (2) 상의 동의, 그리고
 - e) 영주 기간 동안의 확보된 거소
- (4) 외국인은 입국일 또는 영주허가가 부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체류 기간에 대한 의료보험을 증명하는 문서 및 자신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자의 문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외교사절 또는 경찰은 그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의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문서로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외국인은 체류를 위한 재정준비금으로 최소 일 년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저 임금⁴⁹⁾의 금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16세 미만의 외국인은 위의 금액의 절반을 증명하여야 한다.

(7) 경찰은 신청서가 경찰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8조 후속허가

(1) 경찰은 다음의 외국인에게 후속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a) 최초허가를 부여받았던 외국인

b) 다음의 외국인

1. 고용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자. 단, 신청 접수 직전의 연속적인 일시체류가 적어도 5년의 기간 동안 지속하였어야 한다.

2. 사업수행 목적을 위한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자. 단, 신청 접수 직전의 연속적인 일시체류가 적어도 5년의 기간 동안 지속하였어야 한다.

3. 제19조 또는 제20조 (1)에 따라 일시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제23조 (1)(b) - (e)에 규정된 범위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신청 접수 직전에 최소 5년

49) 3) 관세법 및 그 밖의 법에 대한 개정에 관한 법률 199/2004 Coll. 제14조 (6) 및 (9)

간의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자

4.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 접수 직전에 최소 5년간의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자
 5. 영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한쪽 부모로서 신청 접수 직전에 최소 5년간의 일시체류허가를 부여받은 자
- c) 후속허가가 제41조 (g) 하의 사유로 인해 종료되었거나 제42조 (1)(f)에 따라 취소된 외국인
 - d) 후속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18세 미만 자녀

(2) 제1항 (b)의 연속적인 체류의 기간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제20조 (1) 하의 연속적인 고용의 기간 또는 사업수행의 기간, 또는 제23조 (1)(a) - (e) 하의 가족 구성원의 일시체류 기간. 단,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도를 확보하는 기간 또는 그러한 상품의 인도 기간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조립의 수행이나 보증 및 수리작업의 이행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b) 고용이나 사업수행 직전의 학업수행 또는 특수 활동 기간의 절반
 - c) 외국인이 경찰에 통보한 후 슬로바키아 영토 밖에 체류한 경우 연속하여 최대 6개월 그리고 전부 합하여 10개월의 기간
- (3) 경찰이 장기체류허가가 있는 외국인에게 후속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은 유럽경제지역의 관련 국가에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a조

(1) 외국인은 공식 양식을 이용하여 후속허가 신청서를 경찰에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신청서는 그를 대신하는 그의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접수될 수 있다. 경찰은 접수일에 신청서 접수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은 후속허가 신청서와 함께 여행증서 및 제25조 (2) 상의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이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후속허가 신청서를 수락하지 아니한다.

(3) 외국인은 후속허가 신청서에 다음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 제37조 (6) 하의 금액에 이르는 체류를 위한 재정준비금

b)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건강보험

c) 제38조 (1)(d) 하의 외국인으로서 15세 이상인 자의 경우 자신의 진실성

(4) 제38조 (1)(d) 하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공공보건을 위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문서는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경찰은 외국인에게 거소의 확보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문서 및 슬로바키아 언어 과정의 수료를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6) 경찰은 신청서가 경찰에 전달된 후 90일 이내에 후속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7) 최초허가 또는 일시체류허가는 후속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의 교부까지는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9조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1) 경찰은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공공이익, 특히 안보의 측면, 슬로바키아의 경제적 필요, 특히 그 외국인의 사업 활동이 슬로바키아 경제에 공헌하는 정도 및 공공보건
- b)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의 개인적 상황 및 가정 상황, 외국인의 재정적 상황 및 외국인의 이전 체류의 기간
- c) 외국인의 사회에의 융화의 정도

(2) 경찰은 다음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 a) 외국인이 기피인물인 경우
- b) 외국인이 영주허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c) 외국인이 국가의 안보, 공공정책, 보건 또는 다른 이들의 권리와 자유 및 특정 영역의 경우 자연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d)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 e) 영주허가의 신청 목적이 가족 재결합 유지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가족생활을 영위하지 않거나 별도의 법⁵⁰⁾에 따른 혼인을 맺지 않은 경우
- f) 외국인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 의 또는 위조된 문서 또는 다른 사람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 g) 문서의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영주허가 부여에 관한 결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

(4) 경찰은 추가 허가의 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출국을 위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결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제40조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는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⁵¹⁾에 따른 증인의 보호와 조력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슬로바키아의 안보이익을 이유로 한 슬로바키아 정보당국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주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영주허가의 종료

다음의 경우 영주허가는 종료한다.

- a) 외국인이 영주허가의 수여로부터 180일 이내에 슬로바키아 영토를 입국하

50) 16) 가족에 관한 개정 법률 94/1963 Coll.

51) 17) 증인보호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256/1998 Coll.

지 않는 경우

- b)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 종료를 서면으로 경찰에 통보하는 경우
- c) 외국인의 최초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추가적인 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d) 추방의 형이 외국인에 부과되는 경우⁵²⁾
- e) 외국인이 행정적으로 추방되는 경우
- f)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국적을 부여받은 경우
- g) 제38조 (1)(b) 및 (c) 하의 추가적 허가인 경우, 외국인이 장기 체류 허가를 허락받거나 6년 동안 슬로바키아 영토를 떠나 있었던 경우
- h) 경찰이 외국인의 영주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g)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제42조

영주허가의 취소

(1) 경찰은 다음의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a) 경찰이 영주허가 신청의 거절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52) 2) 개정 형법 제57조

- b) 해당 외국인이 제37조 제4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c) 경찰에 통고하지 않고 외국인이 연속으로 18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d) 경찰이 해당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혼인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e) 해당 외국인이 그 배우자와의 가족 재결합을 유지할 목적으로 영주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혼인이 최초허가를 받은 지 5년 이내에 종료한 경우,
- f) 제38조 1항 (b)와 (c) 하의 외국인이 유럽경제지역 이외의 영토에서 연속으로 12월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2) 전항의 규정은, 영주허가의 취소의 결과가 특히 해당 외국인 개인 및 가족의 생명에 관하여 영주허가 취소 사유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경찰은 영주허가의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합리적인 출국 시한을 최대 3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용인체류

제43조

(1) 경찰은 외국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용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a) 제58조에 의한 행정처방에 장애가 존재할 경우,
- b) 임시피난처를 제공 받았을 경우,⁵³⁾
- c) 출국이 불가능하고 구금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d) 슬로바키아의 영토에서 발견된 미성년자일 경우,
- e) 18세 이상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 내무부의 인가를 받은 사법경찰기관이나 사법경찰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본 사유로 인한 용인체류 허가에 대한 가능 여부 및 조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 f) 해당 외국인 개인 및 가족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하며⁵⁴⁾ 국가안보 및 공공정책에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조는 제2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a) 내지 (d)의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용인체류는 제도적 보호, 용인체류 신청서의 평가, 유치의 집행 또는 금고의 집행과 같은 시한을 가지며, 본문은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인체류는 해당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의 서면 신청서의 제출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출국 또는 해당 신청의 철회까지 최대 90일의 시한을 가지며, 본문은 해당 외국인이 구금되었거나 별도의 법률로써 슬로바키아에 체류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⁵⁵⁾ 경찰은 적법한 한도 내에서 용인체류를 고려한 전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규정은 그러한 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3)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54) 17aa)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 (연방외무부 고시 209/1992 Coll.)

55)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 (3) 외국인의 청구에 기하여, 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경찰은 용인거주 사유를 구성하는 결정된 사실 관계에 따라 최대 180일의 용인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해당 경찰은 신청자에게 신청 당일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경찰에 용인체류를 신청할 경우 공식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경찰은 용인체류를 수차 연장할 수 있지만 경찰은 용인체류 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목적을 위하여,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출국에 대한 장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여부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 용인체류 허가 기간에 관한 결정 및 용인체류 허가의 연장에 관한 결정은 재심할 수 없다.
- (6) 용인체류 허가가 유효한 동안, 외국인은 별도의 법령에 규정된 영업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용 관계 혹은 고용 관계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금지는 제1항 (b) 및 (f)와 제8항의 외국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경찰은 제1항 (e)에 의거한 용인체류는 최대 90일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 (8) 경찰은 제1조 (e)에 의거한 용인체류에 대해, 해당 허가가 인정되는 사유가 계속 존재하며 해당 외국인의 체류가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반복이 가능한 최소 180일의 연장을 하여야 하나, 신청자가 인신매매에 관한 형사범죄의 용의자를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도적으로 재개하지 않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용인체류를 연장 할 수 없다.
- (9) 내무부는 제1항 (e)에서 용인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0) 내무부로부터 수권 받은 법집행기관이나 법집행공무원은 제1항 (e)에서

용인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에게 용인체류 동안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가능한 과정이나 계획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 (1) 용인체류 허가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외국인은 그 사실을 안之日起 15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경찰은 용인체류 허가의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결정하였을 때 용인체류를 취소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최종결정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해당 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합리적인 기한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43조 제1항 (f)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외국인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정책에 위해를 가져오는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한다.
- (3) 경찰은 또한 제43조 제1항 (e)에 의한 용인체류 허가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 a) 해당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인신매매에 관련된 형사범죄의 용의자와 접촉을 간신한 경우,
 - b) 해당 외국인의 법집행기관과의 협조가 위장된 것일 경우,
 - c) 해당 외국인이 법집행기관과의 협조를 중지한 경우,
 - d) 국가안보 또는 공공정책에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43조 제1항 (a), (c), (d) 및 (f)의 용인체류 허가는 해당 외국인이 망명 또는 보조적 보호를 청구하거나,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일시체류 허가 또는 영주 허가를 부여 받거나, 해당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 종료한

다. 제43조 제1항 (b)의 용인체류 허가는 임시피난 조항의 종료로써 종료된다.⁵⁶⁾

제4장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타국에서의 출생

제45조

(1) 외국인의 부모가 영주허가를 가지며, 슬로바키아 또는 유럽경제지역의 타국에서 출생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부모는 출생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 동일한 종류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당 외국인의 부모는 제1조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해당 자녀의 여행문서 또는 해당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부모 자신의 여행문서,
- b)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
- c) 제25조 제2항에 기한 해당 자녀의 사진,
- d) 건강보험 납입을 확인하는 문서 및 해당 자녀 체류의 재정적 범위를 확인하는 문서
- e) 거소를 확인하는 문서.

56)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3) 슬로바키아나 유럽경제지역의 타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부모가 체류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모는 제1항의 시한 이내에 출국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슬로바키아나 유럽경제지역의 타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체류는 제1항에 기한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인도될 때까지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및 그 가족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

제45조의 2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려는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의 체류는 최초의 허가에 기한 체류로 본다.

- a) 고용된 경우,
- b) 영업을 개시한 경우,
- c) 슬로바키아 학교에서 공부하며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체류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부담할 재정적 수단을 가진 경우,
- d)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체류비용 및 건강보험비용을 부담할 재정적 수단을 가진 경우,
- e) 고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⁵⁷⁾

57) 예를 들면, 노동법

f) a) 내지 e)의 각 호에 기한 조건을 충족하는 유럽경제지대의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일 경우.

(2)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는 최초허가의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허가의 등록을 위한 신청은 직접 공식 서식에 따라 경찰에 하여야 한다.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는 최초허가의 등록신청과 함께, 여행문서와 거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시민권자가 여행문서 또는 거소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민권자가 기피인물인 경우, 경찰은 최초허가의 등록을 위한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

(3) 경찰은 최초허가의 등록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에, 성명 및 등록자의 주소 및 최초허가의 등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최초허가에 기한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의 체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 종료한다.

a) 해당 시민권자가 경찰에 서면으로 체류의 종료를 통고한 경우,

b) 해당 시민권자가 행정추방을 당한 경우,

c) 해당 시민권자가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5) 최초허가에 기한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의 체류는 또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된다.

a) 노동관계 종료의 사유가 직업적 질병 또는 직업적 부상인 경우,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시민권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b) 해당 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비고용상태가 되었으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년을 초과하여 고용상태에 있었으며 해당 시민권자가 구직자로 등록한 경우,
 2. 해당 시민권자의 1년 미만의 확실한 고용상태가 종료한 경우, 또는 해당 시민권자의 최초 12월간의 고용상태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민권자가 구직자로 등록한 경우,
 3. 해당 시민권자가 직업교육을 개시한 경우.
- c) 해당 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비고용상태가 되었으며 직전의 직업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개시한 경우.

(6)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규정은 최초허가의 등록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3

(1) 경찰은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가 아니며 슬로바키아 영토에 3월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a) 해당 외국인이 제45조의 2 (1)에 기한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특혜외국인”)일 것,
- b)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의 건강관리체계 및 사회보장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2)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유럽경제지대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으로 본다.

- a) 배우자,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및 배우자가 부양하는 자녀,⁵⁸⁾

- b)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양하는 자녀,⁵⁹⁾
- c) 해당 시민권자가 부양하는 독립한 직계친족,
- d) 해당 시민권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친족,
- e) 해당 시민권자 또는 해당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이 부양하는 다른 가족구성원.

(2) 특혜외국인은 최초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외교공관이나 경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특혜외국인은 여행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은 최초허가를 위한 신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혜외국인은 또한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 a)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3매의 사진,
- b) 해당 특혜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거주허가를 받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문서,
- c) 피부양친족 또는 가족구성원임을 확인하는 타당한 소명이 기재된 문서 또는 진술서 (본호는 제2조 (m)의 1목 하의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d) 슬로바키아의 건강관리체계 및 사회보장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확인하는 진술서.

(3) 최초허가를 위한 신청을 허가한 당국은 신청이 제출된 당일 그 접수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경찰은 경찰에 신청서가 인도된 90일

58) 11) 법률 600/2003 Coll. 제3조

59) 11) 법률 600/2003 Coll. 제3조

이내에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4) 경찰은 특혜외국인이 제출한 최초허가를 위한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a) 제1조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b) 해당 특혜외국인이 체류할 동안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공공정책 또는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c) 해당 신청자가 기피인물이거나, 해당 특혜외국인이 거주허가를 획득할 목적으로 혼인 관계를 개시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5) 해당 특혜외국인이 고용되었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회보장체제에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체류비용을 감당할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할 경우 특혜외국인의 최초허가의 권리가 유지된다.

a) 해당 특혜외국인의 체류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사망 이전 1년을 초과하여 지속하였을 경우,

b) 혼인이 종료되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혼인이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었으며 해당 특혜외국인의 체류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된 경우,

2. 해당 혼인으로 인하여 출생한 피부양자녀가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기하여 해당 특혜외국인의 보호 하에 있을 때,

3.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4. 비특혜외국인이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기하여 해당 당국이 결정한 기한 동안 피부양자녀를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만날 권리가 주어졌을 때,

c) 공부하는 해당 특혜외국인의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인 그 부모 중 일인이 사망하였거나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의 체류를 종료하였을 때, 최초허가의 권리는 자녀의 보호자인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학업의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6) 특혜외국인에 대한 최초허가는 제45조의 2 (4)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이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종료된다.

(7) 경찰은 특혜외국인에 대한 최초허가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a) 특혜외국인의 가족구성원인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의 제45조의 2 (4) (a) 및 (b)에 의거한 체류가 종료한 경우,

b) 경찰이 최초허가의 신청을 각하할 사유가 되는 사실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본문은 공중보건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최초허가를 득할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개시했다고 경찰이 결정한 때.

(8) 제6항의 규정은 최초허가의 각하의 결과가 우선적으로 해당 외국인 개인 및 가족의 생명을 고려하여 최초허가의 각하의 사유에 부적절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초허가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결정은 서면으로 내려져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 4

(1)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체류는 해당 시민권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후속허가에 기한 것으로 본다.

- a) 최소 5년의 연속적인 체류를 한 적이 있을 경우,
- b) 최초허가에 기한 최소 3년의 연속적인 체류를 한 적이 있으며, 해당 체류 동안 해당 시민권자가 최소 12월 동안 고용되었거나 영업을 하였으며 퇴직 연금⁶⁰⁾ 또는 조기퇴직연금⁶¹⁾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슬로바키아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 및 혼인하기 위하여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포기한 외국인의 배우자의 연속체류의 요건은 면제된다),
- c) 최초허가에 기한 최소 2년의 연속적인 체류를 한 적이 있으며, 고용이나 영업 종료의 사유가 노동 또는 영업의 영구적 불능인 경우(체류 동안 직업적 부상이나 직업적 질병에 기하여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에게 장애연금이 누적된 경우 또는 배우자가 슬로바키아 시민권자이거나 혼인을 위하여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포기한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경우 연속체류 요건은 면제된다),
- d)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영토에서 고용되거나 영업하며 1주에 최소 1회 슬로바키아 영토로 돌아오며, 과거에 해당 시민권자가 슬로바키아 영토에 연속하여 3년을 체류 및 고용되어 있던 경우,
- e) 제1조 (b) 내지 (d)에 기해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인 경우,
- f)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여 고용되거나 영업하던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와 사별하였으며 해당 시민권자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 사망 전에 연속하여 최소 2년 체류한 경우,

60) 17a) 법률 461/2003 Coll. 제65조

61) 17b) 법률 461/2003 Coll. 제67조

2. 직업적 부상이나 직업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 해당 외국인과 혼인하여 슬로바키아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 (2)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는 후속허가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후속허가의 등록 신청은 공식 서식으로 직접 경찰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는 후속허가의 등록 신청과 함께 여행문서 및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및 제25조 제2항 하의 3개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찰은 신청자에게 신청 당일 접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후속허가의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제46조 제5항의 거주증명서 1부만 신청자에게 발급되면 된다.
- (4) 후속허가에 기한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체류는 제45조의 2 (4)의 사유 또는 해당 시민권자가 슬로바키아 영토에 연속으로 2년을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 의해 종료된다.

제45조의 5

- (1) 경찰은 특혜외국인의 직전 체류가 연속으로 최소 5년 지속되었을 때 또는 제45조의 4 (1) (b) 내지 (f)에 따라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였을 때, 후속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2) 특혜외국인은 최초허가의 효력이 만료하기 최소 60일 이전에 공식 신청을 제출하여 후속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특혜외국인은 후속허가를 신청할 때 여행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문서 및 제25조 (2)에 따른 3매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에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경찰은 신청자의 제출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속허가 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4) 후속허가의 신청이 승인되었을 때 그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5) 특혜외국인의 후속허가는 제45조의 4 (4)에 설정된 사유로 종료된다.

제45조의 6

제45조의 4 및 제45조의 5에 의한 계속적인 거주 기간에는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또는 특혜외국인의 심각한 사유 즉 1년에 6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12개월 및 군 복무의 사유로 인한 외국 체류 기간이 포함된다.

제4편 외국인을 위한 문서

제46조 거주증명

(1) 경찰은 거주허가를 승인하는 결정의 송달 또는 제49조 (2) (b) 하의 거주 신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신청의 제출에 의하여 거주 외국인에게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경찰은 신청서가 제출된 당일에 신청자에게 신청 접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경찰은 허가된 체류 기간에 따라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임시체류허가가 승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인의 여행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보다 최소 90일 이전에 만료되어야 한다. 경찰은 제22조 (2)에 의하여 임시체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의 문서에 “연구인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경찰은 최초허가가 승인된 외국인에게 최대 5년의 거주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인의 여행문서의 유효기간 만료보다 최소 90일 이전에 만료되어야 한다. 후속허가의 경우, 경찰은 10년의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 (1) (b) 및 (c)의 외국인의 거주증명에서 경찰은 “장기체류자 - EC”라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경찰은 별도 법령에 의하여 망명이 승인되거나 보조적 보호가 제공되는 외국인에게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경찰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가 공식 서식의 제출로 요청할 경우, 경찰에 등록되어 있다면 최대 5년의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후거주의 경우, 경찰은 10년의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경찰은 제5항에 따라 거주허가가 승인된 특혜외국인에게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유효한 거주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경찰은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외국인은 최대 5년의 거주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⁶²⁾

(8) 거주증명서는 성명, 국가건강보험번호, 해당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 내의 거소, 거주증명이 발급된 때와 장소, 거주증명서의 만료기간, 체류의 종류, 얼굴 사진 및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선택된 기계판독용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한다. 거주증명서는 또한 출생장소 및 시, 시민권, 성별 및 소지자의 서명을 포함할 수 있다. 거주증명서는 소지자가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서명은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62) 8a)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십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고시 324/1997 Coll.)

(9) 후속허가가 승인된 외국인 및 제3항과 제6항의 외국인은 거주증명서 유효성이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신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0) 슬로바키아 등록국의 문서가 외국인에게 발급되면, 경찰은 거주증명서에 해당 문서의 서식에 사용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해당 외국인의 성명 및 여행문서에 라틴알파벳으로 쓰여 있는 서식에 따라 다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외국인 또는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의 거주허가가 종료하면, 경찰은 거주증명서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면 해당 증명서를 무효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외국인 여권

(1) 외국인 여권은 외국인의 출국을 허가하는 문서이다. 제2항 (d)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여권은 해당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출국 및 슬로바키아 귀국을 허가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2) 경찰은 외국인이 자신의 여행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없으며 해당 외국인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a) 용인체류허가를 승인 받은 자,
- b) 행정추방 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또는 형벌로서 추방이 부과된 자,
- c) 슬로바키아 영토 안에서 출생한 자,
- d) 보조적 보호를 제공 받는 자.

- (3) 경찰은 외국인 여권의 유효성을 필요할 때마다 최대 1년마다 판정하며, 경찰은 외국인 여권의 유효성을 수차 연장할 수 있다.
- (4) 경찰은 외국인 여권이 발급된 목적에 따라 영토적 유효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 (5) 경찰은 발급된 외국인 여권이 발급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철회하여야 한다.
- (6) 행정소송의 일반규칙은⁶³⁾ 외국인 여권의 발급 또는 철회 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외국인 여행문서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영주허가가 승인된 무국적자 및 슬로바키아 영토로의 망명이 승인된 자에게 발급된 여행문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⁶⁴⁾

제5편 외국인과 기타 자연인, 법인의 의무 및 외국인의 등록

제1장 외국인의 의무

제49조

63) 6) 이사회 규칙 (EC) 415/2003 (2003년 2월 27일)

64) 18) 여행증서에 관한 개정 법률 381/1997 Coll.

- 1)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a)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180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슬로바키아 영토 바깥에 체류하려고 할 때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
 - b) 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완전하게 모든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할 것.
 - c) 경찰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여행문서, 거주문서 또는 내무부부에서 국 제법에 따라 외교특권 및 면제의 향유자에게 발급하는 신원증명문서를 제시하여 자신의 신원 및 체류허가사항을 증명할 것.
 - d) 체류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명서를 제출할 것.
 - e) 체류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류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것.
 - f) 여행문서의 기재사항 중 성명, 혼인관계, 시민권, 데이터가 변경이 발생한 지 3근무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여행문서를 교체할 것.
 - g) 이 법에 의해 발급된 문서를 멸실, 도난, 파손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할 것.
 - h) 여행문서 또는 이 법에 의해 발급된 문서의 멸실, 도난 또는 파손을 그 사실을 안 지 3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것.
 - i) 이 법의 절차와 연계한 경찰의 요구가 있다면 출두할 것.
 - j) 제21조에 따라 학업의 목적으로 임시체류허가가 승인된 외국인의 경우 학업의 중단, 포기, 제명 및 종료 이후 슬로바키아 영토를 떠날 것.

- k) 숙박업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문서를 제시할 것.
- l) 체류를 신고하는 공식 서식을 기재할 것.
- m) 체류에 관한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
- n) 3근무일 이내에 체류허가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할 것.
- o) 이 법에서 정한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찰나 외교공관의 생체정보의 수집에 협조할 것.
- p) 허가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유럽경제지역 국가로 늦어도 허가 받은 체류의 최종일까지 출국할 것.
- q) 사증이 필요한 경우, 임시체류허가 또는 추후허가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늦어도 허가 받은 체류의 최종일까지는 출국할 것.
- r) 거주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h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신규 거주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것.

(2) 외국인은 입국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 또는 특혜외국인은 10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a) 제8조 (1) (c) 또는 (d)의 쟁겐 사증이나 국가 사증이 부여된 경우 또는 사증이 면제된 경우, 숙박업자가 제50조 (c) 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체류의 개시, 장소 및 예정기간. 경찰은 외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체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b) 거주허가를 승인 받은 경우, 체류의 개시.

(3)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임시체류 또는 영주의 거소의 변경을 그 변경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4) 제1항 (a), (c), (e) 및 (n)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 (c)는 또한 특혜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스스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연령을 판정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해당 외국인이 미성년자임이 명확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외국인이 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거절할 때에는, 본 법의 소송을 위한 목적으로는 성인으로 본다.

제2장 기타 자연인 및 법인의 의무

제50조 숙박업자의 의무

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a)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것.

b) 숙박부를 유지하고 숙박부에 숙박의 개시와 종료, 성명, 생년월일, 시민권, 체류 목적, 여행문서 및 사증의 수, 입국일, 예상체류기간 및 숙박시설에서의 주소를 기록할 것.

- c) 외국인의 체류를 신고하는 공식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외국인의 숙박의 개시로부터 5일 이내에 경찰에 송달할 것.
- d) 숙박한 외국인의 사망한 경우, 그 사실을 경찰에 자체 없이 신고할 것.
- e) 숙박부의 기록이 판독가능하며 시간순서로 쓰여지도록 할 것.
- f) 최종기록으로부터 5년간의 숙박부를 보관할 것.
- g) 경찰에 숙박시설 영업의 종료로부터 5일 이내에 숙박부를 경찰에 제출할 것.
- h) 경찰 통제 시 숙박부를 제시할 것.
- i)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통제 목적의 경찰이 숙박시설의 전 구역을 출입하도록 승낙할 것.
- j) 별도 규정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숙박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⁶⁵⁾

제51조 운송인의 의무

- (1) 항공 또는 해로로 슬로바키아 영토에 사람을 운송하는 자는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이 사증을 포함한 유효한 여행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월경지점에 운송해서는 아니된다. 이 의무는 또한 월경운송을 제외하고 정기국제버스노선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운송인에게도 적용된다. 사증은 특정 조항에 의해 거주허가로써 대체될 수 있다.⁶⁶⁾

65) 19) 법률 241/2001 Coll.에 의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1/1998 Coll.

66) 19aa) 개정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 (EC) 562/2004 (OJ L 105, 13.4.2006) 제2조 (15)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경지점으로 외국인을 운송한 운송인은 해당 외국인의 도착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월경지점의 경찰과 합의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이 운송되어 온 국가 또는 해당 외국인의 여행문서를 발급한 국가 또는 해당 외국인을 수용할 것이 확실한 국가로 다시 운송하여야 한다.

- a) 해당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 입국이 거부되었을 경우.
- b)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를 경유하여 통과하였으나 타국 당국이 자국의 영토에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여 슬로바키아 영토에 돌려보냈을 경우.
- c) 타국에 해당 외국인을 운송하기로 되어 있었던 운송인이 해당 운송을 거절하였을 경우.

(3) 운송인이 제2항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의 대체운송을 확보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지체 없는 대체운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 및 귀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 월경지점의 경찰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운송인은 타국을 경유하여 슬로바키아 영토로 운송한 승객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인은 늦어도 승객의 출국 등록 종료 전에 그 자료를 전자형식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자통신 두절의 경우에는 다른 적합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a) 여행문서의 수와 종류
- b) 시민권

- c) 줄이지 않은 성명
- d) 생년월일
- e) 입국할 월경지점
- f) 항공편 번호
- g) 비행기의 출발 및 도착 시간
- h) 총 승객 수
- i) 처음 출발한 공항

(6) 항공운송인은 승객에게 제4항의 자료의 규정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제공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1조의 2 공항업자의 의무

공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a) 국경검문을 수행하는 경찰에 제3국으로부터 도착한 항공편 혹은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통보할 것. 공항에 배속된 경찰이 없다면, 늦어도 도착 또는 출발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공항업자에게 24시간 전 이 후에 통보 받았으면, 지연 없이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 b) 경찰이 승무원 및 여행자에 대하여 국경검문을 수행하기 전에는 승무원 및 여행자가 제3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에 승선하지 못하게 할 것.
- c) 승무원 및 여행자가 제3국으로부터 도착한 뒤 국경검문이 수행되지 않는 구역을 통해 공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52조
교도소 및 법정경비대의 의무

교도소, 유치소, 소년원 및 피의자와 미결수를 위한 병원은 수용시설 또는 병원에 따라 관할하는 경찰에 외국인의 유치 및 석방과 외국인의 수형의 개시와 종료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
특정한 법적 실체 및 자연인의 의무

- (1) 근로사회가족 부서는 3근무일 이내에 지체 없이 경찰에 외국인 근로허가의 승인 및 철회를 통보하여야 한다.
- (2) 통상 부서는 3근무일 이내에 지체 없이 외국인 통상허가의 발급, 정지, 종료 또는 취소를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슬로바키아 내의 학교는 3근무일 이내에 지체 없이 외국인 학업의 개시, 중단, 포기, 제명 또는 종료를 경찰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고용자는 3근무일 이내에 외국인과의 고용계약의 종료를 경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5) 외국인의 여행문서나 거주허가를 습득한 자는 가까운 경찰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6) 외국인을 슬로바키아 영토에 초청한 자는 허가된 초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국가가 입은 금전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7)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체류의 통제

제54조

(1) 경찰은 다음 각 호를 통제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a) 체류의 허가, 체류상 의무의 이행 및 이 법 상 외국인 의무의 준수

b) 이 법 상 기타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의무의 준수

(2) 제1항 상 규정된 통제의 수행 중,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a) 영업, 고용이나 학업을 위한 구역 및 숙박시설 구역의 출입. 단, 별도의 규정에서 불가침이 보장되는 구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⁶⁷⁾

b) 신원 증명 및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설명을 요구.

(3) 체류통제시 경찰은 외국인이 위 • 변조된 여행문서로 신원 증명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압수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신원 증명 시, 통제 대상인 외국인의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 국가 당국에 의해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된 것으로 선언된 경우 문서를 압수할 수 있다.

67) 20) 슬로바키아 국회법 324/1996 Coll.에 의해 개정된 대학에 관한 법률 172/1990 Coll. 제2조

(4)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가 제45조의 2 (1) 및 (5)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경찰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의 등록

제55조

(1) 이 법 상의 국가행정의 행사에 있어서 경찰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포괄하는 정보체계의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a)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
- b) 사증 신청자와 승인 및 거부된 사증
- c) 거주허가 신청자, 거주허가가 승인된 외국인 및 각하된 거주허가 신청
- d) 외국인 여권과 외국인 여행문서의 신청자 및 그 문서의 유효기간 연장
- e) 경찰이 초청을 확인한 외국인 및 외국인을 초청한 자
- f) 기피인물
- g) 분실 및 도난된 여행문서 및 발급국가 당국에 의해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된 것으로 선언된 여행문서

(2) 경찰은 제51조 (4)에 의하여 항공운송인이 보내온 승객에 대한 자료를 임시파일에 저장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 자료를 수령한지 24시간 이내에 승객의 입국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⁶⁸⁾

(3) 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타 기록부를 유지하고 기타 정보체계를 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68) 5) 개정된 슬로바키아 국회법 171/1993 Coll.

(4) 이 법에 따라 유지된 정보체계 내의 기록부는 이 법의 절차에 따라 획득된 외국인 및 기타 사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중앙기록부는 내무부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6) 외무부는 정보체계 내에 사증신청자 및 승인 및 거부된 사증에 관한 자료를 포괄하여 내무부의 기록부와 상호 연결된 기록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편

행정추방, 구금, 경찰수송 및 항공환승

제1장

행정추방

제56조

일반규정

행정추방은 출국시한 또는 입국금지시한이 정해진 외국인 체류의 종료에 대한 경찰의 결정을 의미한다. 하나의 결정에 기한 집합적인 외국인 추방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57조

행정추방의 사유

(1) 경찰은 외국인을 행정추방하고 입국금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 다음의 경우 최대 10년 최소 5년

1. 해당 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정책, 타인의 건강 또는 권리와 자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최종결정을 선고 받았으며 추방이 선고되지 않았을 경우⁶⁹⁾

b) 다음의 경우 5년

1.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⁷⁰⁾
2. 이 법에 의한 통제 시 위·변조된 문서 또는 타인의 문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3. 해당 외국인이 승인된 임시체류허가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였을 경우
4. 거주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개시하였을 경우

c) 다음의 경우 최대 5년 최소 1년

1. 해당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슬로바키아 영토에 허가 없이 체류한 경우
2. 해당 외국인이 신뢰할만한 수단으로 신원을 증명하기를 거절한 경우
3. 해당 외국인이 국제법이나 슬로바키아 정부의 결정에 기하여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며 그 국제법이나 슬로바키아 정부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외국인이 거주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거짓 또는 불완전한 자료를 진술한 경우
5. 해당 외국인에게 경찰이 임시체류허가의 승인된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며 해당 외국인이 해당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9) 2) 개정 형법 제57조

70) 21) 법률 260/1999 Coll.에 의해 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약품에 관한 법률 139/1998 Coll.

6. 해당 외국인이 국가 당국의 결정의 이행을 방해한 경우
7. 해당 외국인이 기타 심각하게 또는 반복하여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 하의 행정추방 사유가 복수로 해당 되는 경우, 경찰은 가장 무거운 규정에 따라 입국금지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3) 행정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는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본문은 망명이 승인되지 않아 망명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조적 보호 규정⁷¹⁾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행정추방 결정의 대상자는 결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기한은 결정의 발급 이후 3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경찰은 행정추방의 본문은 망명이 승인되지 않아 망명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나 보조적 보호 규정의 외국인에 대한 최종결정으로부터 최대 30일의 출국기한을 판정하여야 한다.⁷²⁾

(5) 추방에 대한 결정이 집행 가능하게 되면, 경찰은 해당 외국인, 입국금지기한, 기피인물 기록부에 대한 그러한 결정의 사유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여야 한다. 내무부는 시민권의 승인, 제40조에 따른 거주허가의 승인, 입국금지기한의 경과, 추방형의 경과,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추방형의 사면 혹은 해당 외국인의 연령이 80세가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해당 외국인을 기피인물 기록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6) 경찰은 제1항 상 절차의 결과가 해당 외국인 개인 및 가족의 생명 및 해당 외국인의 체류를 고려하여 부적절한 때 제1항에 의한 체류금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영주허가를 승인 받은 외국인을 행정추방하지 않을 수 있다.

(7) 경찰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또는 특혜외국인이 국가안보, 공공정책 및

71)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72) 1)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률 480/2002 Coll.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자를 행정추방할 수 있다. 본문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또는 특혜외국인이 입국한지 3월이 경과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경찰은 추후허가를 승인 받았거나 제43조 (7)에 의하여 용인체류허가가 연장된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 특혜외국인 또는 외국인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정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유에 의해서만 행정추방할 수 있다.

(9) 경찰은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가 제45조의 2 (1) (d)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혜외국인이 제45조의 3 (1) (b)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자를 체류금지기한을 결정하지 않고 행정추방할 수 있다. 단, 본문은 후속허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추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슬로바키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최소 10년을 체류한 유럽경제지역의 시민권자. 단, 본문은 해당 시민권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18세 이하의 아동. 단, 본문은 해당 아동의 추방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 거주허가를 받은 이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

d) 제43조 (7)의 용인체류허가를 승인 받은 외국인.

(11) 경찰이 슬로바키아 영토에의 거주허가를 승인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을 행정추방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승인한 유럽경제지역의 해당 국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심각한 사유로 장기체류 외국

인을 유럽경제지역 바깥으로 행정추방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외국인에게 장기체류를 승인한 국가와 그 결정에 대하여 상의하여야 한다.

(12) 제7항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및 특혜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58조 행정추방의 장애

(1) 외국인은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집단에의 소속,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행정추방 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사형이 선고되었거나 계류 중인 소송에서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행정추방을 할 수 없다.

(2) 외국인은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집단에의 소속,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그 자유가 위협해지는 국가로 행정추방 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본문은 해당 외국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하였거나 특히 중범죄⁷³⁾로 인하여 형벌을 선고 받았으며 슬로바키아에 위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주허가를 승인 받은 무국적자가 행위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정책을 위협하게 한 경우 행정추방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추방의 장애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9조 행정추방 결정의 이행강제

73) 21) 법률 260/1999 Coll.에 의해 개정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과 약품에 관한 법률 139/1998 Coll.

- (1) 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추방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 a) 해당 외국인이 행정추방 결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b) 해당 외국인이 행정추방 결정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더 어렵게 하였다고 추정되며, 특히 신원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 c) 해당 외국인이 국제법에 따라 체약국의 영토로 돌려 보내져야 하는 경우.
 - d) 해당 외국인이 유효한 여행문서 또는 출국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2) 경찰은 인접국으로 행정추방 조치를 받은 외국인을 월경지점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3) 경찰이 행정추방이나 형사처벌로서의 추방을 항공으로 또는 국제법에 기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행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외국인을 수용할 것이 확실한 해당 국가의 영토로 외국인을 운송할 수 있다. 항공을 이용한 추방은 특정 조항에 의해 규제된다.⁷⁴⁾
- (4) 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추방의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지 못한다.
- a) 구금기간이 만료되고 외국인 여권을 사용한 출국의 확보가 불가능한 외국인의 여행문서가 해당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의 외교공관을 통해서도 준비될 수 없는 경우.
 - b) 행정추방 결정의 이행강제 이전에, 외국인이 자발적 귀환을 신청한 경우. 본문은 자발적 귀환이 90일 이내 또는 제43조 (2)의 연장된 기간의 종료시까

74) 22) 미주 없음

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9조의 2
국가의 추방결정의 이행강제

- (1) 경찰은 다음 각 호의 경우 EEA 회원국(이하 “발부국”)의 추방결정의 이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 a) 해당 외국인이 최소 1년의 형기가 선고된 경우.
 - b) 해당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c) 해당 외국인이 해당 국가의 외국인 입국 및 체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제1항의 규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및 특혜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의 결정의 강제에 앞서, 경찰은 발부국 및 해당 외국인이 허가된 거주를 가진 EEA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4) 제1항의 결정의 강제에 앞서, 경찰은 그 결정의 강제가 국제법과 이 법에 합치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 (5) 경찰은 발급국에 추방결정의 강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 (6) 경찰이 발급국의 추방결정을 강제하는 경우, 내무부는 발부국에 소요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7) 제59조 (2) 내지 (4)는 제1항의 결정의 강제에 적용된다.

(8) 다른 EEA 국가에 의해 추방결정의 이행이 강제되는 경우, 경찰은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해 결정의 대상인 외국인에 관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EEA 회원국이 그러한 추방결정을 강제하는 경우, 결정은 변 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9) 다른 EEA 국가에 의해 추방결정의 이행이 강제되는 경우, 내무부는 해당 국가에 소요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추방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

(1) 행정추방으로 발생한 비용은 숙박, 외국인의 승선 및 운송, 외국인의 구금으로 발생한 비용 및 모든 기타 외국인에 관련한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외국인은 행정추방으로 발생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a) 자신의 재정적 수단.

b) 외교공관에 거치된 재정.

(3) 제2항에 따라 행정추방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상환하여야 한다.

a) 허가 없이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자.

b) 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

- c) 허가된 초청에서 그렇게 한 자.
 - d) 제5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송인.
-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추방의 비용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내무부를 통하여 국가가 상환한다.

제61조

- (1) 내무부는 행정추방된 외국인이 관련 결정에 따라 경찰이 결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발적 귀환의 형식으로 출국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 관한 입국금지를 취소할 수 있다.
- (2) 내무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 행정추방 또는 입국금지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 a) 체류의 목적이 특히 해당 외국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위독하여 방문하려는 등의 인도주의적 사유인 경우.
 - b) 해당 외국인의 체류가 슬로바키아의 이익이며 외국에서는 사안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3) 유럽경제지역 시민권자 및 특혜외국인은 행정추방 또는 입국금지의 이유가 된 사정이 상당히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증거에 기초하여 행정추방 결정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내무부는 그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4)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규정⁷⁵⁾은 입국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않는다.

제2장 구금

제62조

- (1) 경찰관은 다음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할 권리를 가진다.
- a) 그/그녀의 행정상 추방의 집행 또는 추방 처벌의 시행,
 - b) 별도의 법⁷⁶⁾에 따른 그/그녀의 수송 또는
 - c) 별도의 법⁷⁷⁾에 따른 그/그녀의 귀국. 단, 그/그녀가 인가 없이 슬로바키아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인가 없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다.
- (2) 별도의 법⁷⁸⁾에 따른 진술 또는 외국인의 자발적 귀국 신청은 구금된 외국인을 석방하는 이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외국인의 구금은 별도의 법⁷⁹⁾에 따른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외국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필요한 기간만큼만 구금될 수 있다. 경찰은 최대 12개월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그/그녀의 행정상 추방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이 충분한 방식으로 협력하지 아니할 것이거나 그/그녀가 첫 번째 항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대체 여행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시행이 연기될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관련된 자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취약한 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5) 6

76) 원문에서 각주 23a)는 존재하지 않음.

77) 23b)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공동의 국경을 통한 자의 인계 및 인수에 관한 협정 (통보 제116/1994 Coll.호).

78) 1) 망명 및 그 밖의 법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제480/2002 Coll.호.

79) 1) 망명 및 그 밖의 법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제480/2002 Coll.호.

- (4) 경찰은 외국인에게 즉시 구금 결정을 발표하고 외국인을 시설에 배치한다. 구금된 외국인의 신원을 즉시 확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면, 경찰은 그/그녀의 구금 결정에 이 자를 다른 자와 혼동하는 것을 방지할 증거를 첨부한다.
- (5) 그 이웃 국가의 당국으로의 인도가 별도의 조약⁸⁰⁾에 따른 소송절차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개시된 구금된 외국인은 그/그녀의 구금부터 최대 7일 까지 경찰에 배치될 수 있다.
- (6) 구금된 외국인은 구금 결정 및 구금 기간의 연장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그러한 결정을 수령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 구제 결정은 지체 없이 한다. 구제의 제기는 정지의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 (7) 제1항은 법정대리인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외국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취약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한 한 최단 기간으로 구금될 수 있다.

제63조

경찰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외국인의 구금 이후 즉시 그/그녀에게 그/그녀가 이해하는 언어로 구금의 이유, 그/그녀가 국민인 국가의 대사관에 구금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및 구금 결정의 합법성 검토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통보할 것을 보장할 의무

80) 23b)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공동의 국경을 통한 자의 인계 및 인수에 관한 협정 (통보 제116/1994 Coll.호).

- b) 관련 외국인이 국민인 국가의 대사관에 그/그녀의 구금을 즉시 통보할 의무. 단, 외국인이 그 통보를 요청한 때에 한한다. 그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슬로바키아의 영토에 있지 아니한 경우, 경찰은 외국인의 구금에 대하여 외교부에 통보한다.
- c) 구금된 외국인이 즉시 가까운 자⁸¹⁾ 및 그/그녀의 변호사에게 구금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게 할 의무
- d) 추방의 집행 또는 외국인의 신원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행동을 취할 의무
- e) 외국인의 전체 구금 기간 동안 구금의 이유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검토할 의무
- f) 구금된 외국인을 과도한 지체 없이 석방할 의무
 - 1. 구금의 목적이 중단된 경우
 - 2. 법원의 결정에 기초하여, 또는
 - 3. 구금 기한이 경과한 경우
- g) 구금 시설의 관리자의 동의로 국제이주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직원이 그러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의무
- h) 관련된 외국인에게 비정부기구와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외국인이 망명을 요청하거나 망명 요청을 의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연합고등난민판무관실에 연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할 의무

제63조a

81) 23) 민법 제116조

구금된 외국인의 숙식

- (1) 구금된 외국인의 숙식은 건강한 영양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외국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종교를 고려하여 현지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각 시간에 확보된다. 외국인은 그/그녀의 구금이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로 숙식을 제공받는다. 구금이 6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외국인의 건강상태 및 나이, 또는 경찰관에게 알려진 그 밖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숙식은 확보되지 아니한다.
- (2) 구금된 외국인이 제공된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그/그녀가 음식을 거부한 이유를 진술한 공식 기록을 작성한다. 그 경찰관은 즉시 그에 관하여 구금된 외국인에게 외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보하며, 서명을 위하여 다른 경찰관의 임석 하에 공식 기록을 외국인에게 제출한다. 그러한 외국인이 음식의 거부에 관한 공식 기록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경찰관들은 이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기입하고 이를 그들의 상관에게 제출한다.
- (3) 숙식비용은 음식이 제공된 외국인에 의하여 배상된다. 그/그녀의 현재 상황이 그/그녀가 비용을 배상할 수 없게 한다면, 숙식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외국인이 그/그녀의 행정상 추방의 집행의 필요에 의하여 구금되었다면, 제60조가 그/그녀의 숙식비용의 배상에 대하여 적용된다.
- (4) 국가가 부담하는 사용된 물건을 포함한 숙식비용의 최고 한도와 숙식의 확보 방식을 포함한 숙식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내무부가 공표한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정에 규정한다.

제64조 시설

- (1) 시설은 그것이 설립된 목적에 적절하고, 위생상 부적절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건강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곳이어야 한다.

(2) 시설은 제65조에 따라 외국인이 독립된 구금으로 시설의 부지 내에 배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생시설, 문화 및 응접실, 그리고 외국인이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밖의 공간을 포함한 주거실을 포함한다.

(3) 주거실에는 수용된 외국인의 수에 상응하는 수의 전등, 책상, 의자, 침대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서랍이 제공된다.

(4) 시설은 독립된 구금을 위한 부지를 가진다.

(5) 시설은 경찰에 의하여 운영된다. 시설의 관리자는 그곳에 투숙하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이 확립된 내부 규정을 공표한다.

제65조 독립된 구금

(1) 경찰은 다음의 경우 구금된 외국인을 시설의 독립된 구금을 위한 부지에 배치한다.

a) 그/그녀가 구금의 목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

b) 그/그녀가 난폭하거나 그 밖의 이유 또는 다른 외국인의 건강의 보호 또는 권리 및 자유를 위하여 강화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c) 그/그녀가 시설의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경우

- d)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의학적 이유에 기인하는 격리 기간 동안
- (2) 독립된 구금 부지는 외부로부터만 잠글 수 있는 주거실을 포함하며 별도의 위생시설 및 신호장치가 제공된다.
- (3) 산책을 위한 공간도 시설의 독립된 구금을 위한 부지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6조

구금된 외국인의 수색

- (1) 경찰은 구금된 외국인을 시설에 배치하기 이전에 그/그녀가 자 및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 탈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중독성의 물질 또는 그 수량 또는 본질상 시설의 내부 정책을 침해하거나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할 목적으로 신체 수색 및 개인 소지품 수색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2) 구금된 외국인은 수색을 받을 의무를 진다.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 수색은 동일한 성별의 자에 의하여 집행된다.
- (3) 경찰관은 구금된 외국인의 신체 수색 또는 그/그녀의 개인 소지품 수색에서 발견한 여행증서, 제1항에 따른 물품 및 물건 및 중독성의 물질을 압류 및 보관할 권리를 가진다.

제67조

외국인의 배치

- (1) 외국인을 시설에 배치할 때, 경찰은 그/그녀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종교적, 민족적 또는 국적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다.

(2) 시설을 운영하는 경찰은 외국인의 시설 배치 이후 즉시 그/그녀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그녀가 배치된 장소 및 그/그녀의 구금에 관련된 그/그녀의 의무 및 권리, 그리고 시설의 내부 정책에 관한 그/그녀의 설명을 확보한다. 설명은 구금된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3) 남자, 여자 및 18세 미만의 외국인은 분리하여 배치된다.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예외가 부여될 수 있다.

(4) 가족은 함께 시설에 배치된다. 경찰이 가족을 분리할 것을 결정한다면, 언제나 그러한 분리의 결과가 그 이유에 적절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8조 건강의 관리

(1) 외국인은 필요한 진단 및 실험 검사, 예방접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당국이 결정한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의사가 결정한 정도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를 진다.⁸²⁾ 취약한 자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외국인의 건강상태가 시설에서 확보될 수 없는 건강관리를 요구한다면, 경찰은 시설 밖의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건강관리를 확보한다.

(3) 외국인이 고의로 그/그녀의 건강에 손상을 야기한다면, 그/그녀는 치료비용 및 감독 및 의료기관으로의 수송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69조

82) 25)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222/1996 Coll.호에 의하여 개정된 국민의 건강 보호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272/1994 Coll.호 제18조

시설에 배치된 외국인의 의무

외국인은 시설의 내부 정책을 준수하고 명령 및 경찰관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시설에 배치된 외국인의 권리

제70조

- (1) 외국인은 지속적인 8시간의 수면 및 최소 매일 1시간의 지정된 공간에서의 산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15세 미만의 외국인은 구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71조

- (1) 외국인은 그/그녀의 비용으로 서면 통보를 송부할 수 있다.
- (2) 그/그녀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슬로바키아 국가 당국에 요청 및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 및 불만은 즉시 경찰에 의하여 송부된다.
- (3) 외국인은 그/그녀의 비용으로 국제적 잡지를 포함한 도서, 일간신문 및 잡지를 주문할 수 있다. 단, 슬로바키아에 유통되는 것에 한한다.

제72조

- (1) 외국인은 3주에 한번 최대 두 명의 자의 30분 동안의 방문을 수락할 권리가 있다. 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때에는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 (2) 외국인은 그/그녀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자의 방문을 제한 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3조

- (1) 외국인은 2주에 한번 개인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소포를 5킬로그램까지 수령할 수 있다. 제한은 의복 소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경찰은 소포의 내용물을 통제한다. 경찰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물품, 물질 및 물건을 외국인에게 주지 아니하며, 외국인의 비용으로 이를 발송자에게 돌려보낸다.
- (3) 외국인은 제한 없이 재정적 수단을 수령할 수 있다. 경찰은 그 보관을 확보한다.

제74조

구금의 종료

시설에서의 체류의 종료 이후, 경찰은 제60조제2항(a)호에 따라 사용된 재정적 수단을 제외한 보관된 재정적 수단과 그 소지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법에 반하는 것을 제외한 보관된 여행증서, 물품, 물건 및 중독성의 물질을 외국인에게 돌려준다.

제3장

경찰 수송

제75조

- (1) 체결당사국이 슬로바키아의 영토를 통한 이웃 국가의 국경검문소로의 외국인의 수송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국제조약에 기초하여 경찰 수송을 집행한다.
- (2) 경찰은 수송되는 외국인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요한 건강관리의 제공을 확보한다.
- (3) 경찰관은 경찰 수송 동안 수송되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 를 가진다.
- (4) 수송되는 외국인은 동일한 성별의 자에 의하여 집행되는 수색을 받을 의무를 진다.
- (5) 경찰은 수송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경찰 수송을 위한 외국인의 인계부터 6시간 마다 숙식을 제공한다.
- (6) 경찰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경찰 수송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 (7) 경찰 호위는 운송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라 수송될 외국인이 항공기, 항공기에 탑승한 자 또는 항공기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항공기 내의 질서 또는 규율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공 승객 수송을 제공하는 운송업자의 요청에 기초하여 경찰에 의하여 수행된다.

(8) 경찰은 호위와 관계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호위의 안전을 제공하는데에 필요한 호위 경찰관의 숫자를 결정한다.

(9) 일반적으로 경찰은 운송업자에 의하여 요청이 제기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최소 제51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만료할 때까지 경찰 호위를 제공한다.

(10) 운송업자는 호위를 제공하는 경찰관에게 부여된 경비 및 여행수당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경찰 호위의 제공과 관계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⁸³⁾

제4장

항공기 환승

제75a조

(1) 내무부는

a) 항공기 환승의 집행을 위한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의 서면 신청(이하 “항공기 환승 신청”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그에 대하여 결정한다.

b) 항공기 환승의 집행을 위하여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에 서면 신청을 제기한다. 단, 슬로바키아 영토로부터 지정된 국가로 직행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심각한 이유로 그러한 항공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83) 각주 25aa)는 존재하지 않음.

- c) 다음을 조건으로 귀국한 외국인을 즉시 수락한다.
 - 1. 항공기 환승 허가가 부인 또는 취소된 경우
 - 2. 항공기 환승 도중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공항의 수송 구역을 벗어난 경우, 또는
 - 3. 다른 이유로 항공기 환승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d) c)호에 따라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된 식사 및 긴급한 건강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이러한 비용이 실제이고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내무부는 외국인의 귀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 e) 제75c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의 귀국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요청한다.
 - f) 수송 공항의 연락 장소를 결정한다.
- (2) 유럽경제지역의 신청국(이하 “신청국”이라 한다)은 항공기 환승으로부터 최소 2일 이전에 서면 항공기 환승 신청을 전달한다. 기한은 특히 긴급하고 정당한 때에는 포기될 수 있다. 항공기 환승의 집행을 위한 신청서 견본은 별표 1에 포함된다.

제75b조

- (1) 내무부는 항공기 환승 신청을 수령한 때부터 2일 이내에 항공기 환승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신청국에 즉시 통보한다. 정당한 때에는 결정의 기한은 최고 48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2) 내무부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그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한다면, 신청국은 항공기 환승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신청국은 항공기 환승 집행의

개시를 내무부에 통보한다.

(3) 항공기 환승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된다.

(4) 내무부는 다음의 경우 서면 항공기 환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a) 신청국이 정당한 때를 제외하고 지정된 국가로 직행 운항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

b) 외국인이 별도의 법⁸⁴⁾에 따라 고소된 경우 또는 그/그녀가 최종 결정에 의하여 부과된 처벌의 집행을 회피하여 수색의 대상이 된 경우⁸⁵⁾

c) 다른 국가를 통하여 항공기 환승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된 국가에 의한 외국인을 수용 확보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d) 외국인의 수송이 공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e) 정당한 이유를 위하여 각 시간에 요청된 지원의 제공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f) 외국인이 공공정책, 국가의 안보, 공중보건 또는 국제관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

(5) 내무부는 이미 공표된 항공기 환승에 대한 결정을 각하할 수 있다. 단, 제4항에 따른 상황의 발생이 이후 결정된 때에 한한다.

(6) 내무부는 다음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국에 즉시 통보한다.

84) 25a) 형사소송법 제141/1961 Coll.호.

85) 각주 25b)는 존재하지 않음.

- a) 항공기 환승의 취소 및 그 취소 이유
- b) 제4항에 따른 항공기 환승의 부인, 그 부인의 이유 및 제4항e)호에 따른 부인의 경우 다음 가능한 항공기 환승 시간

(7) 내무부는 다음을 조건으로 외국인을 즉시 귀국시킨다.

- a) 항공기 환승 허가가 부인 또는 취소된 경우
- b) 항공기 환승 도중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공항의 수송 구역을 벗어난 경우, 또는
- c) 다른 이유로 항공기 환승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75c조

- (1) 내무부가 제75a조제1항a)호에 따른 신청에 기초하여 항공기 환승을 허가한다면, 경찰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경찰은 특히 수송 공항의 부지에서 외국인과 동행하고, 외국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그녀의 동행자에게 긴급한 건강관리 및 식사를 제공한다.
- (2) 내무부는 신청국에 제공된 식사 및 긴급한 건강관리 비용의 부담을 요청한다. 단, 이러한 비용이 실제이고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경찰은 외국인이 제75b조제7항에 따라 귀국하는 동안에도 협력한다.
- (4) 내무부는 신청국에 항공기 환승 중에 발생한 심각한 상황 및 지원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통보한다.

제75d조

- (1) 외국인의 항공기 환승이 동행자와 함께 집행된다면, 동행자는 슬로바키아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요청이 있는 경우 그/그녀의 신원, 항공기 환승 허가 또는 제75b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입증한다.
- (2) 외국인의 동행자는 사복을 입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제7장

경범죄 및 다른 행정범죄

제76조

경범죄

- (1) 어떤 자는 다음의 경우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다.

- a) 인가 없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입국하거나 인가 없이 슬로바키아 영토에 체류하거나 인가 없이 슬로바키아 영토로부터 출국하는 경우
- b) 슬로바키아의 국경검문소를 통과할 목적으로 다른 자의 여행증서를 남용하는 경우
- c) 모든 입국 또는 거주 허가를 인가하는 서류를 인가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경우
- d) 통과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 제23조제4항, 제38a조제2항, 제43조제5항, 제44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5d조제2항, 제46조제9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또는 제6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범죄에 대하여는 1,659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1,659유로까지의 경범죄에 대한 벌금은 수령액에 기초하여 경찰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경범죄는 경찰에 의하여 심리된다. 벌금은 슬로바키아의 국가예산의 소득을 구성한다.

(5)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경범죄 및 그 심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⁸⁶⁾이 적용된다.

제77조 행정범죄

(1) 다음의 경우 외국인의 체류에 관련된 행정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한다.

a) 운송업자가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b) 숙박업자가 제5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c) 학교가 제53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6) 26) 개정된 경범죄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372/1990 Coll.호.

- d) 운송업자가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e) 고용인이 제53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f) 법인이 제54조에 따라 그 의무의 행사를 위하여 경찰관에 즉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 g) 공항 운영자가 제51a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경찰은 제1항(a)호에 따른 행정범죄에 대하여 각 수송된 외국인에 대하여 3,000유로부터 5,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3) 경찰은 제1항(b)호, (c)호, (e)호 및 (f)호에 따른 행정범죄에 대하여 3,319 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경찰은 제1항(d)호 또는 (g)호에 따른 행정범죄에 대하여 각 집행된 운항에 대하여 3,000유로부터 5,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제1항(a)호부터 (c)호에 따른 벌금은 경찰이 의무의 위반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러나 늦어도 의무가 위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다음이 고려된다: 불법적 행위의 심각성, 유효 기간 및 결과, 의무가 반복적으로 위반되었는지 여부, 또는 다양한 의무가 위반되었는지 여부.

(6) 벌금은 경찰에 의하여 징수된다. 벌금은 슬로바키아의 국가예산의 소득을 구성한다.

(7) 벌금은 그 부과에 대한 결정의 최종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8장

일반, 임시 및 최종규정

제78조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1)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규정⁸⁷⁾은 이 법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절차 또는 별도의 규정⁸⁸⁾에 적용된다.
- (2) 외국인이 그/그녀가 체류하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해진 조치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상 이익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제26조제2항(b)호 또는 제26조제2항(i)호에 따른 임시 체류 허가 신청의 기각에 관한 경찰의 결정에 첨부된 이유의 진술에 기입된다. 외국인이 그/그녀가 체류하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해진 조치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상 이익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제39조제2항(c)호에 따른 영구 거주 허가 신청의 기각에 관한 경찰의 결정에 첨부된 이유의 진실에도 기입된다. 취해진 조치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상 이익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외국인이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제57조제1항(a)호에 따른 행정상 추방 결정, 그리고 외국인이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경우 제57조제2항에 따른 행정상 추방 결정에 첨부된 이유의 진술에 기입된다.

제79조

진실성

87) 6) 2003년 2월 27일자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415/2003호.

88) 1a) 2006년 3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562/2006호.

- (1) 외국인은 별도의 법⁸⁹⁾에 따라 범죄사실증명서 초본으로, 또는 그/그녀가 국민인 국가 또는 그 외국인이 지난 3년간 거주한 국가의 범죄사실증명서 초본으로 그/그녀의 진실성을 입증한다. 해당 국가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한다면, 외국인의 국적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이 발급한 동등한 서류나 외국인이 그/그녀의 국적국 또는 이전 거주국의 권한 있는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서 또는 가능하다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 (2) 거주 허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면서 경찰은 범죄사실증명서 사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0조

- (1) 경찰은 이 법 또는 별도의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체류에 관련된 사안을 체류 장소 또는 예정된 체류 기간에 따라 진행한다. 노동을 위하여 이웃 국가로부터 국경검문소를 거쳐 정기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경찰은 노동 장소에 따라 진행하며, 등교를 위하여 이웃 국가로부터 국경검문소를 거쳐 정기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경찰은 학교의 좌석에 따라 진행한다.
- (2) 내무부는 제26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3항 및 제57조제12항에 따른 정보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하여 연락 장소를 결정한다.
- (3)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것으로서 외국어로 발급된 신청서 및 서류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할 의무를 진다.
- (4) 별도의 규정⁹⁰⁾에 따른 행정수수료는 이 법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징수된다.

89) 법 제48/2002 Coll.호에 의하여 개정된 범죄사실증명서에 관한 법 제311/1999 Coll.호.

90) 개정된 행정수수료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145/1995 Coll.호.

다.

(5) 이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등기소 서류로서 다른 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서류는 국제조약⁹¹⁾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인증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체류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된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학업 또는 특정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스스로 체류의 갱신 신청 및 서류의 발급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7) 법정대리인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는 체류와 관련된 사안에서 지정된 후견인⁹²⁾에 의하여 대리된다.

(8) 이 법에 따라 사용되는 공식적 양식은 내무부가 공표한다.

(9) 체류를 보고하거나 등록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거주 허가의 부여를 신청하는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혜택 받은 외국인에 의하여 국가의 안보 또는 공공정책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의 당국에 그러한 시민 또는 혜택 받은 외국인에 관한 이전 경찰 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슬로바키아 영토로 입국한 때부터 또는 그/그녀가 경찰에 그/그녀의 체류를 보고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0) 경찰은 외국인의 거주 허가 신청을 결정할 때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의 당국에 외국인의 사전 체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유럽경제지역의 다른 국가의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체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 임시 체류 허가 또는 최초 허가 신청을 평가할 목적으로, 경찰은 슬로바

91) 30a)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통보 제213/2002 Coll.호).

92) 30b) 개정된 가족법 제94/1963 Coll.호.

키아정보기관의 의견을 요청하며, 슬로바키아정보기관은 그 요청을 수령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에 그의 견해를 송부한다. 내무부는 슬로바키아정보기관이 제55조 제1항에 언급된 등록자와 협의할 수 있게 한다. 슬로바키아정보기관은 그 의견을 확립할 목적으로 제55조 제1항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80a조

경찰은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미성년자인 외국인의 발견을 보고하고 그 외국인을 즉시 외국인이 발견된 지역에 따라 권한 있는 노동, 사회 및 가족 사무소에 인도한다.

제80b조

공중보건을 위협하게 하는 질병의 목록은 슬로바키아의 보건부가 공표한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정에 규정한다.

제80c조

(1) 이 법의 목적상, 경찰과 외교사절단은 사증과 관련된 절차에서 다음의 개인정보 및 다른 자료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 a) 이름, 성, 결혼하기 전 성, 이전 성,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및 출생국, 국적, 혼인 여부, 여행증서에 대한 자료, 생체정보
- b) 직업, 아버지의 이름 및 성, 어머니의 이름, 성 및 결혼하기 전 성, 배우자의 이름, 성 및 결혼하기 전 성, 배우자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 자녀의 이름,

성 및 생년월일, 슬로바키아에서의 이전 체류

- c) 이전 국적, 영구 거주에 관한 자료, 고용인에 관한 자료, 표적국, 사증 종류, 요청된 입국 횟수, 체류 기간, 슬로바키아 사증의 부여에 관한 자료, 방문 목적, 도착일자, 출국일자, 수송수단의 종류, 최초 입국 장소,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연락처에 관한 자료, 슬로바키아에서의 재정적 부담의 방식
- d) 이름, 성, 생년월일, 여행증서의 숫자 및 외국인이 의지하는 또는 외국인을 초청한 슬로바키아 시민과의 가족관계

(2) 이 법의 목적상, 경찰 및 외교사절단은 체류와 관련된 절차에서 개인정보와 제1항 (a)호 및 (b)호와 다음의 다른 정보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 a) 직함, 국적, 체류목적, 최종학력, 슬로바키아 도착 이전 및 도착 이후 고용에 관한 자료, 영구 거주지 및 영구 거주국, 최종 거주지 주소,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장소, 숙박업자의 이름
- b) 배우자의 이전 성, 배우자의 출생국,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의 영구 거주지, 배우자의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거주 장소
- c) 아버지/어머니의 생년월일, 아버지/어머니의 국적, 자녀의 출생지, 자녀의 국적, 자녀의 영구 거주지, 자녀의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거주 장소, 형제 및 자매의 이름 및 성, 형제 및 자매의 생년월일 및 출생지, 형제 및 자매의 국적, 형제 및 자매의 영구 거주지

(3) 이 법의 목적상, 경찰은 유럽경제지역 시민의 체류와 관련된 절차에서 개인정보 및 제1항 (a)호에 따른 다른 자료 및 최종학력에 관한 자료, 해외 영구 거주지, 슬로바키아 내에서의 거주지 및 숙박업자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4) 이 법의 목적상, 경찰은 행정상 추방 및 구금에 관련된 절차에서 개인정보 및 제1항 (a)호에 따른 다른 자료 및 영구 거주지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임시규정

- (1) 2002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된 소송절차는 이 법에 따라 종료한다.
- (2) 2002년 4월 1일 이전에 부여된 사증은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사증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사증으로 본다.
- (3) 장기 체류 및 영구 거주와 관련하여 부여된 사증의 유효성은 이미 만료되지 아니한 한 2003년 3월 31일에 만료한다.
- (4) 이전 규정에 따라 부여된 영구 거주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최초 영구 거주 허가로 간주된다.
- (5) 이전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장기 체류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임시 체류 허가로 간주된다.
- (6)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장기 체류”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정에서 사용되며, 이 법에 따라 임시 체류로 간주된다.
- (7) 이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의 체류를 위한 카드 허가”는 이 법에 따라 유효성이 표시된 거주 허가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유효성은 최대 2004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 (8) 이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체류 금지 결정 및 슬

로바키아 영토로의 입국 부인에 관한 결정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1a조

슬로바키아의 유럽연합 가입 조약의 발효일에 유효한 임시규정

이 규정의 발효 이전에 부여된 유럽연합 시민의 임시 체류는 그 발효일부로 제45a조에 따른 영구 거주로 간주된다. 경찰은 그러한 자에게 제46조 제5항에 따른 영구 거주증을 발급한다.

제81b조

2005년 12월 15일 발효하는 개정에 관한 임시규정

(1) 이전 법적 규정에 따른 이후 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으로서 최소 5년 동안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한 외국인, 또는 그/그녀의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은 “장기체류자 - 유럽연합”이라는 표제의 새로운 거주증을 발급한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민의 가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유럽경제지역 시민 및 혜택 받은 외국인의 영구 거주는 이후 허가에 기초한 체류로 간주된다.

(3) 2005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시된 체류와 관련된 소송절차는 이 법에 따라 종료된다. 그러한 소송절차는 2005년 12월 15일 이전에 유효한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것이 신청인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경우 그에 따라 종료된다.

(4) 2005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시된 행정범죄와 관련된 소송절차는 이전 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제81c조

2007년 1월 1일 발효하는 개정에 관한 임시규정

이전 규정에 따라 부여된 특별 계획에 따른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임시 체류는 특별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임시 체류 허가로 간주된다.

제82조

폐지규정

다음은 폐지된다.

- 법 제70/1997 Coll.호의 6항 및 법 제69/2000 Coll.호에 의하여 개정된 제 슬로바키아 영토에서의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73/1995 Coll.호
- 외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로 입국하는 때에 입증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슬로바키아 내무부 명령 제No. 226/1996 Coll.호

제82a조

이 법은 별표 2에 언급된 유럽공동체 및 유럽연합의 법적 규정을 이행한다.

제6부

이 법은 2010년 4월 5일 효력이 발생하는 제1부의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

101조와 제3부를 제외하고 2010년 1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슬로바키아 대통령, m. p.

슬로바키아 국회의장, m. p.

슬로바키아 정부의장, m. p.

법 제48/2002 Coll.에 대한 별표 1 (개정)

견본

외국인의 항공기 환승 요청서

견본 01

법 제48/2002 Coll.에 대한 별표 2 (개정)

법적 규정 목록 LIST OF IMPLEMENTED LEGAL REGULATIONS

(1) 이 법은 다음의 법적 규정을 이행한다.

1. 공공정책, 공공안보 또는 공중보건의 사유로 정당화되는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에 관한 특별 조치의 조정에 대한 1964년 2월 25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64/221/EEC호, 1964년 4월 4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056, 0850-0857쪽.

2. 회원국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공동체 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제한

의 폐지에 대한 1968년 10월 15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68/360/EEC호, 1968년 10월 19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257, 0013-0016쪽.

3. 공공정책, 공공안보 또는 공중보건의 사유로 정당화되는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에 관한 특별 조치의 조정에 대한 1964년 2월 25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의 범위를 회원국 영토에서 고용된 이후 해당 국가에 체류할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에게로 확대하는 1972년 5월 1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2/194/EEC호, 1972년 5월 26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121, 0032-0032쪽.

4. 설립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국 국민의 공동체 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제한의 폐지에 대한 1973년 5월 21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3/148/EEC호, 1973년 6월 28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172, 0014-0016쪽.

5.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자영업자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해당 회원국에 체류할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1974년 12월 17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5/34/EEC호, 1975년 1월 20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014, 0010-0013쪽.

6. 공공정책, 공공안보 또는 공중보건의 사유로 정당화되는 외국인의 이동 및 거주에 관한 특별 조치의 조정에 대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64/221/EEC호의 범위를 다른 회원국 영토에서 자영업자 자격으로 활동한 이후 해당 회원국에 체류할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국 국민으로 확대하는 1974년 12월 17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5/35/EEC호, 1975년 1월 20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014, 0014-0014쪽.

7. 인신매매의 피해자 또는 불법이민을 촉진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자로서 권한 있는 당국에 협조하는 제3국 국민에게 발급된 거주 허가에 대한 2004년 4월 29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4/81/EC호, 2004년 8월 6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261, 특별판, 19/제7호.

8.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국민의 입국을 위한 특정 절차에 대한 2005년 10월 12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5/71/EC호, 2005월 11월 3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289.

9. 연구, 학생교환, 무보수의 연수 또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국민의 입국 조건에 대한 2004년 12월 13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4/114/EC호, 2004년 12월 23일 출판된 EC Official Journal, L 375.